

# 농림수산부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 요령 제정·고시

- 종돈장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의무화
- 음성일 경우 검사증명서 발급해 주기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 4일 종돈장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 요령은 또 종돈장 외에 양돈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양돈장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차 검사는 간이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1차 검사결과 의양성 또는 양성일 경우에 혈청중화시험을 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종돈장의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한편, 음성으로 판정된 종돈장은 정문에 비발생 농장 표지판을 부착토록 했다. 검사두수는 500두 이하를 사육하는 종돈당은 20두 이상,

501~1,000두는 30두, 1,001~5,000두는 50두, 5,000~10,000두는 70두, 10,000두 이상은 100두 이상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는 오제스키병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종돈의 경우에는 3개월간 별도의 돈사에서 격리사육하고 혈청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때,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요령에 따른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와 증명서 발급은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이 하게 된다.

농림수산부가 고시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 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농림수산부고시 제8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3. 4

농림수산부장관

##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정함으로써 오제스키병의 만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검사대상) 오제스키병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종돈장의 돼지
2. 축산법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받은 양돈장의 돼지
3. 기타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제4조(검사실시기준 및 검사대상 선정) ①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돈장에 대한 검사는 매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
2. 기타 양돈장에 대한 검사는 발생이 의심되거나 검사 필요성이 있을때 실시

② 검사대상은 종돈과 모돈 또는 개체의 증상으로 보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순서로 선정하여 가급적 돈사별로 고른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되 별표1의 기준두수 이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기관) 오제스키병 검사는 시·도가 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축위생연구소장이 실시한다.

제6조(검사방법) 오제스키병 검사는 간이 진단 키트로 일차 검사를 실시하고, 의양성 또는 양성일 경우에는 혈청 중화시험을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제7조(검사결과 조치) ① 검사기관장은 검사결과 양성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오제스키병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직

할시장,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장은 종돈장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당해 종돈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종돈장 정문에 별표2의 비발생 농장 표시판을 부착토록 한다.

③ 시험소장은 양돈장의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축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수입종돈에 대한 사후관리) 국립동물검역소장은 수입종돈 검역결과를 검역종료 즉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간 다음과 같이 특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종돈은 입식 양돈장에서 3개월간 별도의 돈사에서 격리 사육
2. 수시 임상검사 및 종료시 혈청검사 실시

제9조(종돈등록과 검정시 확인 등) ① 종축 등록기관과 검정기관에서는 당해 반기중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정을 실시한다.

② 시·도지사는 종돈장에 대한 정기 점검시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제10조(벌칙적용) 시·도지사는 종돈업자가 이 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기피 및 거부할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의 관계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